

의안번호	제 745 호
의결연월일	2026. 1. 9. (제311회 임시회)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

발의자	가선숙 의원 외 11명
발의연월일	2025. 12. 19.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

[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745 호
----------	---------

발의연월일: 2025. 12. 19.

발 의 자: 가선숙, 강문수, 김맹호,
김용경, 문수기, 안동석,
안원기, 안효돈, 이경화,
이정수, 최동목, 한석화 의원

1. 제정이유

- 서산시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밀도·분산 거주로 인해 식료품·생활용품 등 기초 생활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식품 사막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충남연구원의 <충남 쇼핑 약자 기초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서산시의 면 지역에는 식료품 소매점이 부족한 마을이 다수 존재하고, 서산시 쇼핑 약자가 872명(3.8%)으로 확인되는 등 생활편의 접근성 격차가 주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 이에 서산시 농촌의 식품 사막화 해소와 기초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 수립 근거(안 제3조 및 제4조)

- 시장이 농촌 생활 여건을 고려해 시책을 마련하고, 목표·추진 방향·조사연구·재원 확보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및 공동체 육성(안 제5조 및 제6조)
-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기관·단체 등이 구성한 공동체의 조직·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 교류 협력 및 사무 위탁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과 재능 나눔 활동을 지원하며,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9조 및 제38조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비용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저밀도·분산 거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식품 사막”이란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3.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란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등 생필품을 수요맞춤형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해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 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 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급 체계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자원 확보 방안
5. 사후관리 및 평가
6.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시장은 농촌 주민의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컨설팅 및 관련 교육
2.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홍보
3.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4. 지역 내 유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협력
5.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 공동체의 육성) 시장은 지역 안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① 시장은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교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재능 나눔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이하 생략)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 7의2. (생략)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0호, 2023. 8. 16.,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57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이하 생략)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지원계획(안 제4조),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지원(안 제5조)에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원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에 따라 미첨부

4. 작성자 :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성 광 석